

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에 따라 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9. 2. 15. ~ 2. 1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19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owoon@korea.kr

2) 주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3) 팩스 : 061-749-477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0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2. 14.

1. 개정이유

-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 확보 및 가정친화 문화 확산시킬 수 있도록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2018 단체 협약(순천시↔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천시지부)체결 내용 반영

2. 주요내용

-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연가사용 활성화
 - 신규임용자 등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1개월~1년 미만 : 11일)
 - 연가당겨쓰기 도입, 연가사용권장제 도입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 부담 완화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5일→10일)
 - 모성보호시간 확대(임신 쉼기간 日 2시간), 육아시간 확대(생후 1년 미만 → 만 5세 이하)
- 기타 제도 정비
 -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 연월일수(年月日數)로 명확화 등
- 2018 단체협약 내용 반영
 - 장기재직 휴가 일수 조정 : 30년 이상 (20일→ 30일)
 - 자녀입영 특별휴가(1일→2일), 포상휴가(3일→5일), 수능자녀 특별휴가(1일)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9376호, 2018.12.18. 일부개정)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 제출자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12. 31. ~ 2019. 1.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의필 : 2018. 12. 27.(여성가족과-4535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12. 27.(전략기획과-1493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12. 31.(순천시 공고 제2018-2044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공무원증 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18조제2항의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를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연가 일수의 공제) ① 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frac{\text{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 연도 연가 일수}$$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공제한다.

⑥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외출 반일 연가는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⑦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4(연가 당겨쓰기) 시장은 공무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제18조의5(연가 사용의 권장)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8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이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시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시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무원에게 통보

제19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참” 을 “지각” 으로, “제20조 제3항” 을 “제18조의3 제6항” 으로 한다.

제22조제5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제23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6항 중 “따른다”를 “따르며, 휴가는 3회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소급 및 이월은 금지한다.”로 한다.

제23조제6항제3호 중 “20일”을 “30일”로 한다

제23조제10항 “불임치료”를 “난임치료”로 하고, “난자”를 “여성공무원은 난자”로 한다.

제23조제12항 “3일” 을 “5일” 로 한다.

제23조제13항 “입영 당일 1일” 을 “입영 시 2일” 로 한다.

제23조제1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23조제16항과 같은 조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⑮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 ⑯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3,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자녀 또는 그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의2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 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복장 및 복제 등) ①~② (생략)	제12조(복장 및 복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 다.	③ -----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 신처 총리령)-----.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 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제18조(연가 일수) ①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재직기간</th><th style="text-align: center;">연가 일수</th></tr> </thead> <tbody> <tr><td>3개월 이상 6개월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3</td></tr> <tr><td>6개월 이상 1년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6</td></tr> <tr><td>1년 이상 2년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9</td></tr> <tr><td>2년 이상 3년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2</td></tr> <tr><td>3년 이상 4년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4</td></tr> <tr><td>4년 이상 5년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7</td></tr> <tr><td>5년 이상 6년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20</td></tr> <tr><td>6년 이상</td><td style="text-align: center;">21</td></tr> </tbody> </table>	재직기간	연가 일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6개월 이상 1년 미만	6	1년 이상 2년 미만	9	2년 이상 3년 미만	12	3년 이상 4년 미만	14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재직기간</th><th style="text-align: center;">연가 일수</th></tr> </thead> <tbody> <tr><td>1개월 이상 1년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1</td></tr> <tr><td>1년 이상 2년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2</td></tr> <tr><td>2년 이상 3년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4</td></tr> <tr><td>3년 이상 4년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5</td></tr> <tr><td>4년 이상 5년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7</td></tr> <tr><td>5년 이상 6년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20</td></tr> <tr><td>6년 이상</td><td style="text-align: center;">21</td></tr> </tbody> </table>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재직기간	연가 일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6개월 이상 1년 미만	6																																		
1년 이상 2년 미만	9																																		
2년 이상 3년 미만	12																																		
3년 이상 4년 미만	14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 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 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 간에 산입한다.	② ----- 「공무원 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 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 ----- ----- ----- ----- -----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 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 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 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현행	개정안
<u>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u> 2. ~ 3. (생략) <u><신 설></u>	<u>따른 휴직기간</u> 2. ~ 3. (현행과 같음) <u>제18조의3(연가 일수의 공제) ① 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u> <u>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u> $\frac{\text{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text{연가 일수}$ <u>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u>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u>

현행	개정안
	<u>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u> <u>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u> <u>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u> <u>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 교육훈련</u> <u>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u> <u>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u> <u>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공제한다.</u>

현행	개정안												
	⑥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외출 반일 연가는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⑦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4(연가 당겨쓰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table border="1"> <tr> <th>재직기간</th><th>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th></tr> <tr> <td>1년 미만</td><td>5</td></tr> <tr> <td>1년 이상 2년 미만</td><td>6</td></tr> <tr> <td>2년 이상 3년 미만</td><td>7</td></tr> <tr> <td>3년 이상 4년 미만</td><td>8</td></tr> <tr> <td>4년 이상</td><td>10</td></tr> </table>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신설>	제18조의5(연가 사용의 권장) ① 시장은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④ (생략) ⑤ <u>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u>	②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u> 1. <u>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u> 2. <u>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시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시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무원에게 통보</u>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④ (현행과 같음) <u><삭 제></u>

현행	개정안
⑥ 시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삭 제>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삭 제>
○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당해년도 휴직기간) / 12월 × 당해년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외출 반일 연가는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삭 제>
④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	<삭 제>

현행	개정안
<u>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u> 제21조(병가)①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u>지찰·조퇴</u>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공가)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u>건강진단</u>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u>건강검진</u>을 받을 때 6. ~ 10. (생략) <u><신설></u>	제21조(병가)①----- ----- ----- ----- ---- <u>지각</u>----- -----제18조의3 <u>제6항</u>----- ----- ----- 제22조(공가)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u>건강진단</u>,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u>건강검진</u> 또는 「<u>결핵예방법</u>」 제11조제1항에 따른 <u>결핵검진등</u>----- 6. ~ 10. (현행과 같음) 11. 「<u>검역법</u>」 제5조제1항에 따른 <u>오염지역</u>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u>오염인근지역</u>으로 <u>공무국외출장</u>, <u>파견</u> 또는 <u>교육훈련</u>을 가기

현행	개정안
제23조(특별휴가) ①~③ (생략) ④ <u>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u> <u>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u> <u>수 있다.</u>	<u>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u> <u>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u> 제23조(특별휴가) ①~③ (현행과 같음) ④ <u>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u> <u>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u> <u>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u> <u>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u> <u>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u> <u>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u> 1. <u>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u> <u>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u> <u>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u> 2. <u>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u> <u>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u> <u>한 것으로 계산함</u> 3. <u>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u> <u>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u> <u>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u> <u>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u> <u>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u> <u>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u> ⑤ ----- ----- ----- ----- ----- ----- <u>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u> <u>우 실시하지 아니한다.</u> ⑥ -----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서신설>	
⑥ 시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현행	개정안
없는 한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에 <u>따른다</u>. 1. ~ 2. (생략)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u>20일</u> ⑦ ~ ⑨ (생략) ⑩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u>불임치료</u>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u>난자</u>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⑪ (생략) ⑫ 시장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u>3일</u>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⑬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u>입영</u>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⑭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녀를 둔 공무원이 <u>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하여 자녀 학교 등을 방문할 경우에는 각 호당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u>.	----- - ----- ----- ----- <u>따르며, 휴가는 3회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소급 및 이월은 금지한다.</u> 1. ~ 2. (현행과 같음)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u>30일</u>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 <u>난임치료</u> ----- -----. ----- <u>여성공무원은 난자</u> -----. ⑪ (현행과 같음) ⑫ ----- ----- <u>5일</u> ----- ----- ----- ----- ⑬ ----- --- <u>입영 시 2일</u> --- --- ⑭ <u>자녀가 있는</u>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u>자녀돌봄휴가</u>를 받을 수 있다.

현행	개정안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육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재학 중인 자녀 ⑮ (생략) 〈신 설〉 〈신 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⑮ (현행과 같음) ⑯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⑰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08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2. 14.

1. 개정이유

-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추가 개원에 따른 명칭과 위치 규정,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및 재 위탁 관련 규정 명시, 민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근무상한연령 조항 삭제

2. 주요내용

- 공립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명칭과 위치 규정(제2조)
 - 별표1(공립 순천시 선평빛찬들어린이집/순천시 서면 선평동선길 36)
(공립 순천시 신대중흥7차에코누리어린이집/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150)
(공립 순천시 신대중흥8차에코둥이어린이집/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147)
- 위탁기간 및 재 위탁 횟수 규정(제4조)
 - 위탁기간 5년, 재 위탁 1회 가능(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민법 규정상 용어변경(제22조)
 - 금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 한정치산자 → 피한정후견인
- 근무상한연령 조항 삭제(제28조)
 - 관련 조항의 법적 근거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관련 조례 조항 효력 미 인정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8. 22. ~ 9. 10.) 결과 : 의견 2건
 - ① 2018. 9. 4. 노준복 (전남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 위탁횟수 제한의 삭제 요청
 - ② 2018. 9. 4. 순천시 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 조례개정시기의 연장(2019년 상반기)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8. 21.(성별영향평가시스템)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8. 16.(전략기획과-888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8. 21.(순천시 공고 제2018-1366호)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른다.

제4조제4항(현행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재 위탁 후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도 어린이집의 위탁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시설로 본다. 단,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별표 1]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연번	명 칭	위 치	비고
1	공립 순천시 풍덕어린이집	순천시 역전광장 3길 15(풍덕동)	
2	공립 순천시 저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순천시 정충사길 5(저전동)	
3	공립 순천시 선양어린이집	순천시 덕월1길 34(덕월동)	
4	공립 순천시 연향어린이집	순천시 연향2로 60(연향동)	
5	공립 순천시 강청어린이집	순천시 서면 강청길 134	
6	공립 순천시 우석어린이집	순천시 서면 선평길 11	
7	공립 순천시 낙안어린이집	순천시 낙안면 민속마을길 1690	
8	공립 순천시 승주어린이집	순천시 승주읍 승평길 15	
9	공립 순천시 주암어린이집	순천시 주암면 외광길 24-37	
10	공립 순천시 동부종합복지관어린이집	순천시 장선배기길 18(조례동)	
11	공립 순천시 가곡참샘어린이집	순천시 고지1길 57(가곡동)	
12	공립 순천시 상사어린이집	순천시 상사면 이천길 15	
13	공립 순천시 신대어린이집	순천시 해룡면 매안4길 34	
14	공립 순천시 오천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순천시 풍덕새길 37(풍덕동)	
15	공립 순천시 신대푸르니어린이집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2	
16	공립 순천시 선평빛찬들어린이집	순천시 서면 선평동선길 36	
17	공립 순천시 신대중흥7차에코누리어린이집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150	
18	공립 순천시 신대중흥8차에코동이어린이집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14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탁운영) ①~② (생략) <u><신 설></u> ③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24조의2에 따른다. <u><신 설></u>	제4조(위탁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른다.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재위탁 후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도 어린이집의 위탁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제22조(징계결정 기준) ① (생략) ②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해임 처분해야 한다. 1. <u>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u> 2 ~ 6 (생략)	제22조(징계결정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u>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u> ----- 2 ~ 6 (현행과 같음)
제28조(근무상한연령) ①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 보육교직원이 제1항의 근무 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u><삭 제></u>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0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2. 14.

1. 개정이유

- 순천시 꿈나무 장난감도서관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과 통합 운영됨에 따라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난감 대여기간을 “20일” 에서 “21일” 로 변경
- 연회비 면제대상 중 국가유공자 추가
- 꿈나무 장난감 도서관 명칭 삭제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4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12. 31. ~ 2019. 1. 20.)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12. 24.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12. 27.(전략기획과-1493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12. 28.(순천시 공고 제2018-2051호)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20일”을 “21일”로 한다.

제1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장난감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희망장난감도서관	순천시 조례2길 31, 조례호수도서관 1층	
육아종합지원센터장난감도서관	순천시 읍산길 27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수탁자”란 제11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7조(대여수량 및 기간 등) ① (생략) ② 회원은 대여자료를 20일 이내 반납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 1점당 5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연회비 면제)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 설〉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제12조 ----- -----. 제7조(대여수량 및 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21일 ----- ----- -----. 제10조(연회비 면제) ----- ----- -----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별표] 장난감도서관 명칭과 위치 <table><tr><th>명칭</th><th>위치</th><th>비고</th></tr><tr><td>꿈나무장난감도서관</td><td>순천시 장선배길 16-1</td><td>〈삭제〉</td></tr><tr><td>희망장난감도서관</td><td>순천시 조례2길 31, 조례호수도서관 1층</td><td></td></tr><tr><td>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td><td>순천시 연향동 1591-1<수정></td><td></td></tr></table>	명칭	위치	비고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순천시 장선배길 16-1	〈삭제〉	희망장난감도서관	순천시 조례2길 31, 조례호수도서관 1층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순천시 연향동 1591-1<수정>		[별표] 장난감도서관 명칭과 위치 <table><tr><th>명칭</th><th>위치</th><th>비고</th></tr><tr><td>희망장난감도서관</td><td>순천시 조례2길 31, 조례호수도서관 1층</td><td></td></tr><tr><td>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td><td>순천시 읍산길 27</td><td></td></tr></table>	명칭	위치	비고	희망장난감도서관	순천시 조례2길 31, 조례호수도서관 1층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순천시 읍산길 27	
명칭	위치	비고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순천시 장선배길 16-1	〈삭제〉																				
희망장난감도서관	순천시 조례2길 31, 조례호수도서관 1층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순천시 연향동 1591-1<수정>																					
명칭	위치	비고																				
희망장난감도서관	순천시 조례2길 31, 조례호수도서관 1층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순천시 읍산길 27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1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2. 14.

1. 개정이유

- 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 증진과 공정성 확보

2. 주요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 (제3조 ~ 제5조)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제6조)
-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등 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 (제9조)
-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 세부기준 신설 (제12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7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12. 31. ~ 2019. 1. 20.)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12. 27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12. 27.(전략기획과-1493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12. 28.(순천시 공고 제2018-2055호)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천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3조(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센터의 주요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센터 운영의 합리성,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 센터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학부모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

2. 학계 및 현장전문가

3. 센터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센터업무 담당자로 한다.

⑦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순천시 보육정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퇴직 등에 의하여 대표성을 상실하였을 때

4. 회의소집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세 번 연속 불참했을 때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법 제51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운영실태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순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항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4항의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3.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5. 수탁자가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대표가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는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사, 간호사, 영양사, 아동보육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을 종사자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관리
11.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센터 이용자 범위) 센터를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시 (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호자
2. 시 소재 보육시설 및 보육 교직원
3. 그밖에 센터의 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센터 사용 허가) ① 센터의 강당, 교육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시 주관 행사
2.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1조(센터 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 또는 시설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

1. 시설이나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염병 질환자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센터 사용 또는 이용료 감면) ① 시장은 시설 사용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사용 또는 이용료를 징수·감면 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등 세부 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등록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족

마.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가지고 있는 세대원

④ 제3항에 따른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의2(센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 또는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나 정지 되었을 때

3. 센터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센터 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① 시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 저명 인사 또는 외부 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센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사무에 대해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시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장 어린이집 운영

제15조(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아, 영아전담, 시간연장 및 휴일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교재·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의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차량운영비
8. 보육아동 급식비
9. 그 밖에 시장이 보육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경우 교재·교구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정부가 고시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③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지역적 수요가 많아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방과 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방과 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방과 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학령기 아동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정의 초등학생 자녀
2. 보건복지부지침으로 정하는 저소득층가정의 초등학생 자녀
3. 맞벌이·한부모·조손가정의 초등학생 자녀
4. 그 밖에 일반가정 초등학생 자녀

제18조(시범어린이집의 지정) 시장은 공립·법인·민간어린이집 중에서 각각 시범 보육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방과 후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형을 개발·발전시킬 수 있다.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재교육)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통하여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상급기관에서 동일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0조(준용)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 기준

○ 사용(이용)료 기준 (제12조제2항 관련)

시설	이용자	이 용 료	이용횟수	비 고
강당사용	단체	사 용 료 : 30,000원 냉난방비 : 10,000원	1회(1시간기준)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교육실사용	단체	사 용 료 : 10,000원 냉난방비 : 5,000원	1회(1시간기준)	
시간제보육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보건복지부 지침 준용	보건복지부 지침 준용	
장난감대여	개인,단체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용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용	
놀이방	개인,단체	무료	1회(90분)	
육아지원 프로그램	개인 단체	10,000원 이하 5,000원 이하	1회(1인기준)	재료비, 교재비 본인부담
교육	개인,단체	10,000원 이하	1회(1인가준)	
상담 프로그램	개인,단체	10,000원 이하	1회(1인기준)	
기타 공연등	개인,단체	소정 금액	1회(1인기준)	

※ 단체 기준 : 10인 이상 순천시 소재 보육시설 및 공공기관

[별표 2]

센터 사용료(이용료) 감면 및 반환 기준

○ 사용료(이용료) 감면 기준 (제12조제4항 관련)

시설	감면율	대상
장난감대여	순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족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이 있는 세대원
놀이방	50%	
육아지원 프로그램	50%	
교육	50%	
상담 프로그램	50%	
기타 공연 등	50%	

○ 사용료(이용료) 반환 기준 (제12조의2 제2항 관련)

구 분	반환금액
-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이용)료 전액
- 사용(이용) 개시일 전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사용(이용)일 또는 이후에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과 취소일까지의 이용 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